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293
----------	------

제출년월일 : 2008년 10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안이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에 의거 영상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사업공모에서 2006년 6월 제천영상미디어센터가 선정되어 개관을 준비함에 따라,
- 비영리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와 영상교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명칭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으로 함.
-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 436 (청전동)에 둠.

#### 나. 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안 제3조)

-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및 창작활동 지원
- 우수 영상물 상영, 영화, 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 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8조)

-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수탁관리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 라.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3조)

-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미디어센터 사업계획·예산·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마. 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안 제14조)

-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 및 감면내용을 정함.

바.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위탁해지(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수탁관리자의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에 대한 의무 사항을 정함.
- 수탁관리자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정함.
- 수탁관리자의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불 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하여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제천시 의림대로 436 (청전동)에 둔다.

제3조(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유지 관리
2. 지역의 복합 영상·미디어 문화교육 및 제작활동 지원
3. 미디어센터 장비의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등의 제공
4. 영상물 상영, 영화, 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각급 학교와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
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종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 회의실, 휴게실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 관리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재산의 범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미디어센터의 재산의 범위(이하 “재산”이라 한다)는 건축물·장비·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이용료, 수탁관리자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의사업) ①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및 후원금품 등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센터 운영책임자 및 운영관계자
  2.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3. 문화·교육·영상분야 전문가 및 법인·단체 관계자
  4. 기타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영상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이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미디어센터를 시민의 영상 문화의식 함양 등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관리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조 사업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리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15조,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미디어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관리자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미디어센터 사업 목적에 위반되게 운영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고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회계운영) ①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제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관리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시설 및 장비 이용료 등 기준표(제14조 관련)

### □ 시설이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시설	구분	단위	금액(원)	적용 기준	이용자격	비고
1층	촬영세트장	이용료	1일	300,000	실별기준		장기 대여시 할인 혜택
2층	스튜디오 (조종실 포함)	이용료	4시간	40,000	실별기준	• 정회원 • 해당기기 관련 워크숍 이수자	• HD-Beta 사용 : 2500/10분 • 위 사양 외 Format 500/10분
	녹음 스튜디오	이용료	4시간	20,000	실별기준		
	편집교육실	이용료	4시간	5,000	1인기준		
	고급편집실	이용료	4시간	10,000	1인기준		
3층	다목적실	이용료	1시간	2,000 (회원)	실별기준	정회원	
				5,000 (비회원)			
	상영관	이용료	4시간	40,000	실별기준		
	에코강의실	이용료	1시간	5,000	1인기준		
	아카이브실	이용료	4시간	1,000	1인기준	정회원	
	중강의실	이용료	4시간	10,000	실별기준		
	동아리방1	이용료	4시간	3,000	실별기준	정회원	
	동아리방2	이용료	4시간	3,000	실별기준	정회원	

◇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 장비이용료 &lt;부가가치세 별도&gt;

(단위 : 1일)

구분	장비	구분	금액(원)	적용기준	비고
카메라	DCR-SR62	이용료	10,000	• 정회원 • 해당기기 관련 워크숍 이수자	베터리*1, 충전기*1, 케이스*1, 포함
	HDR-FX1	이용료	20,000		
	HVR-V1	이용료	20,000		
	HVR-Z1	이용료	25,000		
	HVR-Z7N	이용료	30,000		
	GY-HD200U	이용료	35,000		
	GY-HD250U	이용료	40,000		HDV VCR 포함
	PDW-F355L	이용료	60,000		
렌즈	VCL-HG0872K	이용료	2,000	• 정회원 • 해당기기 관련 워크숍 이수자	
	RAYNOX HD-FXR180	이용료	3,000		
삼각대	TH-650	이용료	2,000		
	VCT-1170RM	이용료	3,000		
	VCT-PG11RMB	이용료	3,000		
	Manfrotto503	이용료	3,000		
	ENG2CF	이용료	10,000		
조명	Two-way Light(1300W)	이용료	3,000		
	Battery Video Light	이용료	2,000		
	Reflector	이용료	1,000		

구분	장비	구분	금액(원)	적용기준	비고
오디오	Location Sound System (sernheiser + Boom pole + wind shield)	이용료	10,000		
	W/L Mic	이용료	5,000		
	HAP6	이용료	1,000		
노트북	Xnote E300AP50K	이용료	3,000		
	MacBook 13"	이용료	5,000		
면집	HVR-M15	이용료	10,000		
영상장비	Junior Steadycam	이용료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회원</li> <li>▪ 해당기기 관련 워크숍 이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회원</li> <li>▪ 해당기기 관련 워크숍 이수자</li> </ul>
	Junior jimmy JIB	이용료	50,000		
	Fig Rig	이용료	3,000		
	프로젝터 + 이동식스크린	이용료	20,000		
	이동식앰프 (마이크포함-60W)	이용료	20,000		
기타	DollyS	이용료	5,000		<p>프로젝터+스크린 +앰프 함께 대여시 = 30,000원</p>
	Zoom Servo Kit	이용료	5,000		
	외장하드	이용료	1,000		
	Rain Jacket	이용료	2,000		
	Battery NP-F970	이용료	1,000		
	Slate	이용료	500		(단위: 1개 기준)
	DV-tape (6mm-60Min)	판매	3,000		(단위: 1개 기준)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관련 국제기구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공연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 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8 - 954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9. 19.

제천시장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명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에 의거 영상문화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사업공모에서 2006년 6월 제천영상미디어센터가 선정되어 개관을 준비함에 따라,
- 비영리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와 영상교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명칭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으로 함.
-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 436 (청전동)에 둠.

#### 나. 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안 제3조)

-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및 창작활동 지원
- 우수 영상물 상영, 영화, 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 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8조)

-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 수탁관리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 라.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1조)

-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인 이내의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미디어센터 사업계획·예산·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 마. 이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안 제12조)

-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 및 감면내용을 정함.

## 바.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위탁해지(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수탁관리자의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에 대한 의무 사항을 정함.
- 수탁관리자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정함.
- 수탁관리자의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축제영상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5125, FAX 641-5129, 담당자 : 임명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 사보	축제영상팀장	문화관광과장			
임명규	이상천	10/09 김동석			

##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08-954호
3. 공고기간 : 2008. 9. 19. ~ 10. 9.(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 21명 / 의견제시 2명
7. 조치계획

의견 제시자		제시의견	조치계획	비고
소속	성명			
청풍영상 위원회	황선흥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재원은 국·도· 시비 보조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재원 보충	•미반영 - 조례(안)에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있음.	조례 7조
제천시의회	최석영	•미디어센터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 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반영 - '무상' 삭제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조례 7조
제천시의회	최석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에서 제정	•반영 - 위원회 설치, 직무, 기능, 회의 등 위원회 운영 전 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	조례 10조

붙임 : 조례(안) 1부. 끝.